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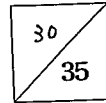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자
33	21	1996. 10. 17	총재 이 경 식

의 안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 개정

의결사항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57조, 제59조

제의취지 가계의 저축 증대 및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가계장기저축의 예금지급준비율을 현행 세금융대 장기저축에 대한 예금지급준비율과 같이 3%로 결정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 참고사항 >

### 제의관계 범규조항 발췌

#### 한국은행법 제57조

-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예금지급준비금의 율은 제58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분의 50이하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 한국은행법 제59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 57조, 제58조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요구불예금과 기한부예금 또는 기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분류에 의한 종류별 은행예금에 대한 개별적 최저예금지급준비율의 결정
2.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의 100분의 25까지 한국은행권으로써 보유하는 것의 허용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 개정 (안)

현행	개정 (안)	비고
<p>제1조 (생략)</p> <p>제2조 (예금지급준비의 최저율) ① 「한국은행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의 최저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호부금, 주택부금에 대하여는 3.0%</li> <li>2. 2년이상 만기 정기예금, 2년이상 만기 정기적금에 대하여는 6.0%</li> <li>3. 기타예금에 대하여는 9.0%</li> </ol> <p>② (생략)</p> <p>제3조 ~ 제5조 (생략)</p>	<p>제1조 (현행과 같음)</p> <p>제2조 (예금지급준비의 최저율) ① 「한국은행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의 최저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u>가계장기저축</u>, 상호부금, 주택부금에 대하여는 3.0%</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 ~ 제5조 (현행과 같음)</p>	<p>- 가계장기저축에 대해 3.0%의 지급준비를 적용</p>
<p>(신설)</p>	<p>부칙</p> <p>이 규정은 가계장기저축의 도입을 위해 개정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p>	<p>- 시행일자 명시</p>